



제1758호
2023년 3월 2일
목요일

선 람	기관의 장

훈 령

○ 훈 령 제 4 0 6 호 남동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감 사 실 2

공 고

○ 공 고 제 4 6 5 호 간석자유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관련 소유권 이전 및 보상 생활 경제 과 4
(공탁) 완료에 따른 지장물 철거 및 퇴거(이사) 요청 촉구
공시송달 공고

○ 공 고 제 4 7 3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식 품 위 생 과 8
공고

○ 공 고 제 4 8 1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식 품 위 생 과 9
공고

고 시

○ 고 시 제 2 5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수현지구 소로3-5호선)사업 실시계획 도 시 제 생 과 10
(변경)인가고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
면 고시

회 람								
--------	--	--	--	--	--	--	--	--

훈 령

남동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3. 3. 2.

남동구 훈령 제406호

남동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남동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민원봉사과”를 “감사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7명”을 “6명”으로, “3명”을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관부서의 국장, 주관부서의 과장”을 “주관부서장”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구민 청원 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청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원업무의 주관부서를 감사실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청원심의회 구성사항을 직제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청원업무 주관부서 변경(안 제3조제1항)
 - 주관부서: 민원봉사과 → 감사실
- 청원심의회 구성사항 정비(안 제5조제1항 및 제4항)
 - 1항) 심의회 위원: 7명 → 6명(외부위원 4명, 내부위원 2명)
 - 4항) 내부위원: 구 소속 공무원(3명 → 2명)
 - ▷ 부구청장, 주관부서 국장, 주관부서 과장 → 부구청장, 주관부서장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465호

간석자유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관련 소유권 이전 및 보상(공탁)
완료에 따른 지장물 철거 및 퇴거(이사) 요청 촉구

공 시 송 달 공 고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 “주차장:간석자유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로 인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보상금의 공탁)의 규정에 의거 보상(공탁) 완료 및 소유권 이전(수용)에 따른 지장물 철거 및 퇴거(이사) 요청 촉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퇴거(이사) 요청 촉구 등 통지가 불가능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3. 1.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간석자유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7-116번지 일원

다. 사 업 규 모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A=2,306㎡, 지하1층/지상3층 3단)

라. 사 업 기 간 : 실시계획고시일(2022.2.17.) ~ 2024.12.31.

마. 사업 시행자 : 남동구청장

바. 수용재결[22수용0079 / 재결일:2022.10.21. /수용 개시일:2022.12.15.

2. 공고기간 : 2023. 3. 1.(수) ~ 2023. 3. 16.(목) (16일간)

3. 공시송달 공고 대상(지장물 철거 및 퇴거(이사) 요청 촉구 공문 미수령자)

소재지	지 번	지목	호수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전유부	대지권	성명	주소	
남동구 간석동	224-3	대	2**호	36.13	22.90/187	- 임*규 - 장*자 (직계가족)	인천 남동구 간석로72번길 3*-1 2**호(간석동)	보상(공탁) 금액은 별도 안내

※ 2023. 3. 20.(월)일까지 지장물 철거 및 퇴거(이사) 촉구 : 미이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예정(다음페이지 참조)

4. 지장물 철거 및 퇴거(이사) 요청 공문 주요 내용

가. 지장물 철거 및 퇴거(이사) 요청 원인(사유) : 도시계획시설 사업 수용재결

1)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사건번호 : 22수용0079/재결일: 2022. 10. 21.)

- 수용의 개시일 : 2022. 12. 15.

- 소유권이전 등기일 : 2022. 12. 26.

나. 보상금 공탁 및 소유권 이전

-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0조(공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보상금의 공탁) 규정에 따라 보상금 공탁(인천지방법원 공탁소 보관)을 완료하고 소유권을 남동구청으로 이전(수용)함

- 소유권이전 등기일 : 2022. 12. 26.

다. 지장물 철거 및 퇴거(이사) 요청 촉구 : 2023. 3. 20(월)까지

- 관련법령 : 같은 법 제43조(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

- 기한 내(2023. 3. 20) 지장물 철거 및 퇴거(이사) 미 이행 시 무단 사용 토지 등 지장물에 대한 무단점유사용료 부과, 부당이익금 환수 소송 진행 및 같은법 제89조(대집행)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 처리, 같은 법

제95조의2(벌칙)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 (관할 경찰서 고발 등)

5. 기 타

가. 공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소유자 등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생활경제과(☎032-453-26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공탁금 출급 안내문(인천지방법원 공탁소) 1부

[별지양식]

공탁금(유가증권) 출급청구 안내문

귀하가 피공탁자로 지정된 공탁금이 납입되어 있으므로 공탁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표를 참조하여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우리 법원 공탁소를 방문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공탁금 출급청구권자			
			개 인	법 인	법인 아닌 사단·재단	관공서
공 탁 금 액	5천만원 초과	공탁통지서	○	○	○	○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	○	○	×
		신분증	○	○	○	○
	5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	공탁통지서	×	×	○	○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	○	○	×
		신분증	○	○	○	○
	1천만원 이하	공탁통지서	×	×	×	×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	×	×	×
		신분증	○	○	○	○

※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그 액면금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갈음하여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 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1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와 법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할공탁소 뿐만 아니라 가까운 지방법원 또는 지원 공탁소(관할공탁소와 같은 특별시 및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외)에서도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대법원행정예규) 참조).
- 공탁금이 5,0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 전자공탁홈페이지(<http://ekt.scourt.go.kr>)에서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출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며, 서명은 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으로 합니다.
※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이체 가능한 은행을 확인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사용인감계는 허용되지 아니함) 등 관공서 발급서면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가져 오시기 바라며,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이 청구할 경우에는 위임장(본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것), 본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단,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친권은 공동행사가 원칙이므로 부모 중 한명이 오실 경우에는, 배우자의 위임장·인감증명서 또는 배우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증명서를 추가로 가져오셔야 합니다).
- 법인의 경우에는 위의 첨부서류 외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피공탁자 여러 명을 상대로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에는 다른 피공탁자의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나 확정판결서 등 출급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 있어야 출급이 가능합니다.
- 법인 아닌 사단·재단(종중, 교회 등)이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위의 첨부서류 외에 정관 또는 규약과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특히,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대표자 선임결의서 등)에는 2인 이상의 성년이 사실과 같다는 뜻을 적고 자필서명한 다음 각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공탁금 출급청구서 양식은 우리 법원 공탁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법원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안내 : 첨부서면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탁소로 오셔서 신청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473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의거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일자 : 2023. 3. 15.
3.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23. 2. 28. ~ 2023. 3. 14.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 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직권말소 예정일
휴 게 음식점	2014- 0199878	고스트캐슬 인천구월점	오** 양**	남동구 인하로 497-15 (구월동, 501호일부)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6-11-27	2023-03-15
휴 게 음식점	2015- 0199614	요거프레소	김**	남동구 석산로 135, 1층 102호 (간석동, 금호센터프라자)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1-02-27	2023-03-15
휴 게 음식점	2015- 0199680	줄리아의 커피정원	한**	남동구 석산로 190, 1층 103호 (간석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7-06-10	2023-03-15
휴 게 음식점	2015- 0199876	물음표	이**	남동구 논현로 145, 719동 1층 102호 (논현동, 새터마을신일해피트리)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6-07-11	2023-03-15
휴 게 음식점	2015- 0199922	카카오 츄러스	박**	남동구 논고개로 87, 1층 (논현동, 논현메디스타워 106호일부)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6-01-01	2023-03-15

6. 고 지 사 항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2023. 3. 14.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직권말소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결청인 인천광역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 (032)453-2621

2023. 2. 28.

남 동 구 청 장

공 고

남동구청 공고 제2023-481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의거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23. 03. 17.
3.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23. 03. 02. ~ 2023. 03. 16.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 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직권말소 예정일
일반음식점	2019-0203751	빈잔(Vinjan)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말로44번길 32, 웅빈하이츠8차 1층 일부호 (구월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3-01-31	2023-03-17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2021-0202216	빈잔(Vinjan)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말로44번길 32, 웅빈하이츠8차 1층 일부호 (구월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3-01-31	2023-03-17

6. 고 지 사 항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2023. 3. 16.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직권말소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결청인 인천광역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 (032)453-2622

2023. 3. 2.

남 동 구 청 장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3-25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수현지구 소로3-5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수현지구 소3-5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 및 이를 반영한 지형도면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6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도로과 ☎032-453-5643, 도시재생과 ☎032-453-2954)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3. 3. 2.

남 동 구 청 장

가. 실시계획(변경) 인가에 관한 사항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397-1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칭: 수현지구 소3-5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규모(변경)

- 당초: L=165.7m, B=6.0m A=1,030m²
 - 변경: L=165.7m, B=6.0m~6.6m, A=1,056m²
- ※ 기존 도로 시점부 일부구간(L=43m) 확폭(B=6.6)에 의한 면적 변경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남동구청장(도로과)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5.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고시일 ~ 2023.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따로 붙임

☐ 용지조서(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관리 관계	
1	기정	장수동	397-10	도	1,030	1,030					
1-1	변경	장수동	397-10	도	1,030	1,030					
2	변경	장수동	397-11	전	37	13		인천광역시			도로 확폭에 의한 신규편입
3	변경	장수동	405-7	도	36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 확폭에 의한 신규편입
4	변경	장수동	398-9	전	22	1		인천광역시			도로 확폭에 의한 신규편입
합 계				기정	1,030	1,030					
				변경	1,125	1,056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결정(변경)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인가된 때에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보는 사항임

2.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381-2번지 일원(수현지구)

3.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나.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다.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라.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 변경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 별	번호	폭원 (m)								
당초	소로	3	5	6	국지 도로	165.7 (110)	중1-10 장수동 397-4	장수동 406-1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변경	소로	3	5	6~6.6	국지 도로	165.7 (100)	중1-10 장수동 397-4	장수동 406-1	일반 도로		인고98호 (2006.6.5.)	

※(): 사업지구내 도로연장 사항임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 내 용	변경 사 유
변경	소로3-5	소로3-5	· 도시계획선 폭원 변경 - 폭원: 당초(6m) → 변경(6.6m)	· 원활한 차량 양방통행을 위한 도로 일부구 간 확폭(L=43m구간 B=0.6m 추가확폭)

마.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 변경 없음

4.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